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3. 7. . (제 회)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재무과)
제출연월일	2013. 7.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	--------

제출일자 : 2013. 7.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의결 주문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 가. 일부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2.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근거 법률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예에 맞게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
- 나.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세 부담을 줄이며
- 다.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

-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기간을 2013. 12. 31.까지 1년 연장하고 (안 제3조)
- 나.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하며
- 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안 제7조)
- 라.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 1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 제1항과 제19조의4 제1항 제1호

4. 개 정 안 : 붙임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6. 참고 사항

- 가. 관련 법령 발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8조 4항,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 제1항, 제19조의 4 제1항 제1호 등
- 나. 입법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다. 예산 관련 사항 : 해당 없음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으로 하고,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3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 및 감면 받은 지방세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관련 법률>

지방세 특례 제한법

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항 ~ ③항 내용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인근 시군 재산세 감면 규정

성주군 균세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성주 농공단지
2. 전남 농공단지
3. 월항 농공단지

칠곡군 균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기산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군위군 균세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사람(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 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군위 농공단지
2. 효령 농공단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사람(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의성 농공단지
2. 봉양 농공단지
3. 다인 농공단지
4. 단밀 농공단지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청도 농공단지
2. 풍각 농공단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고아 농공단지
2. 해평 농공단지
3. 산동 농공단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 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된 구 조문

제16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폐지된 구 조문

제16조(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